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7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5. 6. 12.
- (3) 회 부 일 : 2025.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실태조사) ① (생략)	제31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애인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내용, 공표방법-----.

2. 검토의견

-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4.0%, 624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13.2%, 187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7.5%, 107건), 기타 장소(6.1%, 87건) 순으로 나타남(참고자료 1: 연도별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현황).¹⁾

이처럼 장애인거주시설은 학대 발생 비율이 높은 주요 공간 중 하나로, 최근까지도 대구 희망원 거주장애인 사망사건,²⁾ 울산 태연재활원 거주장애인 학대사건³⁾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일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1,524개소가 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피해사건을 체계적으로 인지·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⁴⁾

- 동 조사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 세부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내 내역사업 중 ‘사업운영비’에 편성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 박중엽. (2024. 3. 12.). 대구 희망원 2년새 거주 장애인 3명 질식사.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82>)

3) 백민. (2025. 4. 21.).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복지부·울산시 자립지원 정책·예산 적극 지원해야”.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80>)

4)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음.

된 1억원의 예산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거주시설에 한정하여 환류되고 있으며, 대국민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개요 >

- (조사연혁)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
 - * 영화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계기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추진('11.10월)
 - * 「인강원」 장애인 상습 폭행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발표('14.10월)
 - *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관련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추진 ('25.3월~)
- (조사내용) 시설 일반현황, 인권 예방활동 운영현황(인권교육,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인권침해사례 면담조사 등
- (조사주기 및 대상) 매년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대상시설 발굴
 - *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 인권취약시설, 인권침해 의심 시설,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등
- (관련예산) 연간 100백만원 이내
- (조사방법) 민간 위탁 또는 복지부·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현장방문 조사(이용자 및 종사자 인터뷰)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개정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예산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조사의 지속성·신뢰성·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조사 결과 공개 여부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행법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은폐·축소 우려가 높은 시설 내 인권침해를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정책 수립의 예측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하여 구체적 개별사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사항, 가해자, 시설 명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거주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낙인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의 공표 방식, 공개 범위, 익명화 수준 등은 하위 법령 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범위 관련, 현재와 같이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전국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의 전환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전 장애인 대상 인권실태조사’로의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사 범위 등을 확대할 경우, 유사 실태조사의 추진 방식 및 운영 사례를 토대로 예산·인력의 추가 확보, 조사 주기의 조정 등 실행 기반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2: 유사 실태조사 관련 현황).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결과 공개 등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사대상 및 조사주기 불합리, 이해관계자 반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① 조사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한정하거나(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아동, 아동, 노인 등 실태조사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이며, 특정시설 대상의 실태조사 사례 없음), ② 조사주기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③ 시행시기는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 고려 1년 이상 필요, ④ 이해관계자와 논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장애실태조사」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여 추진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⁵⁾ 개정).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요구 등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9. 가구유형·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획재정부

□ 유사 입법례 비교 시 특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례 없음.

- 실태조사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계층 중심으로 시행 중

* (입법례)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아동복지지원 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만 특정하여 인권실태 조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대내외의 다양한 관리·감독·감시체계에 의해 운영 투명성과 인권보장 시스템이 담보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임

- 보건복지 분야 행정조사(실태조사, 현황조사 등)의 조사주기는 3년 또는 5년이나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는 너무 과도하며 동일 사례가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낙인효과 및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등

라. 한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 등록장애인(2,631,356명)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26,987명)는 1.1% 수준으로 조사대상을 거주시설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통상 정부 행정조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전례가 없으며, 조사주기 및 내용 공표 등은 신중한 고려 필요함.
-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및 기능보강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낙인효과와 시설의 부정적 인식 확산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연도별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945	100	1,008	100	1,124	100	1,186	100	1,418	100
피해 장애인거주지		310	32.8	394	39.1	462	41.1	486	41.0	624	44.0
학대 행위자 거주지		79	8.4	93	9.2	107	9.5	93	7.8	107	7.5
기타거주지		-	-	9	0.9	23	2.0	13	1.1	15	1.1
직장		76	8.0	99	9.8	58	5.2	60	5.1	58	4.1
교육기관		41	4.3	30	3.0	25	2.2	66	5.6	69	4.9
일반 의료기관		30	3.2	4	0.4	6	0.5	5	0.4	7	0.5
정신 의료기관				9	0.9	4	0.4	6	0.5	7	0.5
장애 인복 지 시설	소계	277	29.3	176	17.5	221	19.7	245	20.7	226	15.9
	거주시설	204	21.6	150	14.9	143	12.7	198	16.7	187	13.2
	지역사회 재활시설	73	7.7	19	1.9	16	1.4	39	3.3	33	2.3
	직업재활 시설			7	0.7	62	5.5	8	0.7	6	0.4
그 외 보호시설 (쉼터)		22	2.3	1	0.1	2	0.2	3	0.3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0	2.0	5	0.4	29	2.4	29	2.0
정신요양시설				2	0.2	1	0.1	1	0.1	2	0.1
정신재활시설				0	0	0	0	2	0.2	3	0.2
아동관련시설				1	0.1	11	1.0	2	0.2	13	0.9
노인관련시설				4	0.4	5	0.4	0	0	8	0.6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2	8	0.7	6	0.5	14	1.0
종교시설		11	1.2	11	1.1	3	0.3	5	0.4	8	0.6
미신고시설		18	1.9	22	2.2	28	2.5	0	0	20	1.4
온라인		0	0	5	0.5	15	1.3	25	2.1	41	2.9
상업시설		51	5.4	61	6.1	56	5.0	56	4.7	78	5.3
기타		18	1.9	56	5.6	83	7.4	76	6.4	87	6.1
파악안됨		12	1.3	9	0.9	1	0.1	7	0.6	4	0.3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유사 실태조사 관련 현황〉

구분	장애실태조사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 사	노인실태조사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1조	「아동복지법」 제11조	「노인복지법」 제5조
조사대상	장애인 (등록장애인)	장애아동 및 그가족	아동 (18세 미만)	노인 (65세 이상)
조사주기	3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조사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표본조사(외부의뢰), 지자체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부의뢰)	보건복지부장관 (외부의뢰)
조사내용	장애인 일반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복지시설 이용 등 복지욕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지원상황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장애아동 복지지원현황,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등	아동의 가구환경,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조관계,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 등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제상태 및 주택,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 노인 소득·재산 등,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 등
'23년 소요예산	1,242백만원	30백만원	600백만원	1,124백만원

주1): 소요예산은 가장 최근 실시한 연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